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 11. 12.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 14개 국가기관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약 235억원) 부적절 편성
-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예산 압도적, 제도 개선 필요

목차

목차	2
요약	3
조사배경 및 취지	5
1. 특수활동비 감축, 충분한가	5
2. 조사내용 및 대상	6
국가기관의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안 전체 개요	7
1. 국가기관의 연도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 추이	7
2019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사업 현황 및 평가	11
1. 2019년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증감 현황	11
2. 2019년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편성 점검 및 평가	16
3.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27
결론	31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전년대비 9% 이상 감축,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도 감소(62→45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2018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사업도 일부 확인돼

-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정보원 예산을 제외한 2019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2018년 대비 9.5%(293억 1300만원) 감축된 279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함.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되어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타당성을 점검함.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 특수활동비가 폐지됨.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도 2018년 62개에서 2019년 45개로 17개 감소함.
- 특수활동비가 동결된 사업이 4개, 증액·신규 편성된 사업도 각각 5개, 3개가 있었음. 국무조정실의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법무부의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등은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인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동결되거나 증가함.

21개 사업, 약 235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돼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중 최소 69.3% 이상, 국정원이 타 기관에 편성한 예산으로 추정

-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 14개 기관(국가정보원 제외)의 45개 사업 중 최소 21개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234억 7500만원)가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 사례는 운영기본경비, 국정수행경비, 외교상 의전 소요비용 등이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운영 등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함.
- 2019년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비밀활동비, 정보예산)은 최소 1939억 5000만원에 달하며 이것만으로도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69.3%에 해당함. 산출근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고려할 때 그 해당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2018년(2028억 1900만원) 대비 4.4%(88억 9600만원) 감소하는데 그쳤고, 경찰청과 통일부는 해당 예산이 도리어 각각 4.3%, 14.8% 증가함.
-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거나, 필요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하며,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예산의 집행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함. 해당 기관에게 집행 권한이 있다면 예결산심사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함.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에 숨길 수 없도록 국정원법 개정도 필요함.

조사배경 및 취지

1. 특수활동비 감축, 충분한가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¹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제외하면, 2018년까지 총 19개 국가기관에 배정돼 집행되고 있는 예산임.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경비지출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러나 다수의 기관들은 관례적으로 예외없이 지출 후 일체의 증빙을 생략해왔고, 그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눈 먼 예산’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특히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목적 외 용도로 유용, 급여성 지급 의혹 등 잡음이 많았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그에 따라 지난 수년간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이 2018년 예산에서 일부 감축됨.
- 올해 참여연대가 국회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드러남. 이를 계기로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고, 정부는 국정원을 제외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년대비 9.5%(293억 1300만원) 감소한 279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함³.
- 지난해에 이어서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일부 감축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년대비 20% 이상 삭감했던 2018년 예산에 비해 감소폭이 작으며,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¹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²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2017.11.16) 참고

³ 참여연대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한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2018년 3092억 9000만원, 2019년 약 2799억 7700만원이나, 언론이 정부발표안으로 보도한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2018년 3168억원, 2019년 2876억원으로 연도별 약 75억~76억원 차이가 있음. 개별 기관으로 보면 2018년 예산 기준 경찰청 23억7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억1700만원, 법무부 3400만원 정도의 금액차가 있음을 확인함. 언론보도는 “[SBS\(2018.9.10.\), \[취재파일\] 그들이, 우리가 특수활동비에 집착하는 이유는](#)” 참고

2. 조사내용 및 대상

1. 조사내용

- 2018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받은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점검·분석
- 2018년 대비 2019년 정부예산안의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 변화
- 2018년 대비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감축/동결/증가한 개별사업 현황
- 2019년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 검토
: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및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과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근거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2. 조사대상

- 국정원을 제외한 조사 대상 국가기관은 아래와 같음
 - 행정부(17개 중앙부처·청)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관세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국회, 대법원

국가기관의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안 전체 개요

1. 국가기관의 연도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 추이

- 참여연대가 2018년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던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확인해 살펴본 결과, 각 기관별 특수활동비 예산 추이 및 연도별 총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2016년~2019년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전체 현황 및 증감⁽¹⁾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6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정부제출안)	'18년 대비 '19년 예산 증감(%)
감사원	3,774	3,868	3,096	2,632	▼ 464 (15.0%)
경찰청	129,796	130,157	91,209	81,609	▼ 9,600 (10.5%)
공정거래위원회	40	40	35	0	▼ 35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²⁾	677	779	518	526	▲ 8 (1.5%)
관세청	706	706	564	451	▼ 113 (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230	1,230	984	913	▼ 71 (7.2%)
국민권익위원회	422	422	380	0	▼ 380 (100%)
국방부	178,334	181,434	147,992	136,813	▼ 11,179 (7.6%)
국세청	5,449	5,449	4,359	3,487	▼ 872 (20.0%)
국회	7,858	8,158	6,272	980	▼ 5,292 (84.4%)
대법원	270	320	256	0	▼ 256 (100%)
대통령경호처	11,883	10,695	8,500	8,500	- (변동없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14,692	12,488	9,650	9,650	- (변동없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79	65	0	▼ 65 (100%)
방위사업청	-	33	30	0	▼ 30 (100%)
법무부	28,529	28,547	23,761	22,882	▼ 879 (3.7%)
외교부	990	891	713	713	- (변동없음)
통일부	2,049	2,177	2,144	2,461	▲ 317 (14.8%)
해양경찰청	7,787	8,128	8,762	8,360	▼ 402 (4.6%)
합계	394,565	395,601	309,290	279,977	▼ 29,313(9.5%)

(1) 2016~2018년까지는 본예산 기준, 2019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2017년까지 본예산에 포함되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사업인 정보보호활동비(7037-302)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본예산과 2019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14개 기관에서 총 2799억 77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었고, 이는 2018년 예산안(3092억 9000만원) 대비 약 9.5%(293억 1300만원) 감소한 것임. 이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 2018년 수준에는 못미치나, 참여연대가 지난해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에서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업 예산(294억 800만원)만큼 감축 된 것으로 평가함.
 - 19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293억 1300만원(9.5%) 삭감
3092억 9000만원(2018년) → 2799억 7700만원(2019년)
-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기관(5곳)
 - 공정위, 권익위, 대법원, 민주평통, 방위사업청
 - 공정위: 3500만원(전액) 삭감
3500만원(2018년) → 0원(2019년)
 - 권익위: 3억 8000만원(전액) 삭감
3억 8000만원(2018년) → 0원(2019년)
 - 대법원: 2억 5600만원(전액) 삭감
2억 5600만원(2018년) → 0원(2019년)
 - 민주평통: 6500만원(전액) 삭감
6500만원(2018년) → 0원(2019년)

- 방위사업청: 3000만원(전액) 삭감
3000만원(2018년) → 0원(2019년)
- 특수활동비 예산이 일부 감축된 기관(9곳)
 - 감사원, 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회, 법무부, 해양경찰청
 -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년대비 84.4% 감소
 - 특수활동비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도 각각 7.6%, 10.5%, 3.7% 감축
 - 국회: 52억 9200만원(전년대비 84.4%) 감소
62억 7200만원(2018년) → 9억 8000만원(2019년)
 - 국방부: 111억 7900만원(전년대비 7.6%) 감소
1479억 9200만원(2018년) → 1368억 1300만원(2019년)
 - 경찰청: 96억원(전년대비 10.5%) 감소
912억 900만원(2018년) → 816억 900만원(2019년)
 - 법무부: 8억 7900만원(전년대비 3.7%) 감소
237억 6100만원(2018년) → 228억 8200만원(2019년)
-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 기관(3곳)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 대통령경호처: 전년대비 동일
85억원(2018년) → 85억원(2019년)
 - 대통령비서실: 전년대비 동일
96억 5000만원(2018년) → 96억 5000만원(2019년)
 - 외교부: 전년대비 동일
7억 1300만원(2018년) → 7억 1300만원(2019년)
-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기관(2곳)
 - 과기부, 통일부
 -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통일정책추진활동(7033-303) 사업 아래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예산은 국정원이 관할하는 정보예산으로 추정됨.
 - 과기부: 800만원 (전년대비 1.5%) 증가
5억 1800만원(2018년) → 5억 2600만원(2019년)

- 통일부: 3억 1700만원(전년대비 14.8%) 증가
21억 4400만원(2018년) → 24억 6100만원(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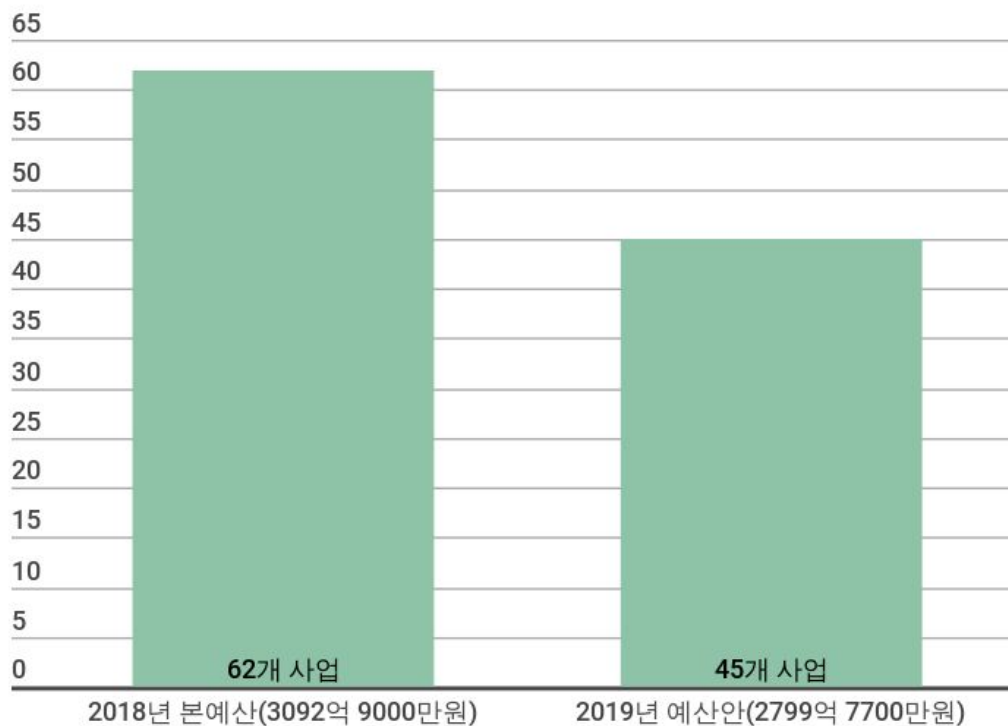
2019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사업 현황 및 평가

1. 2019년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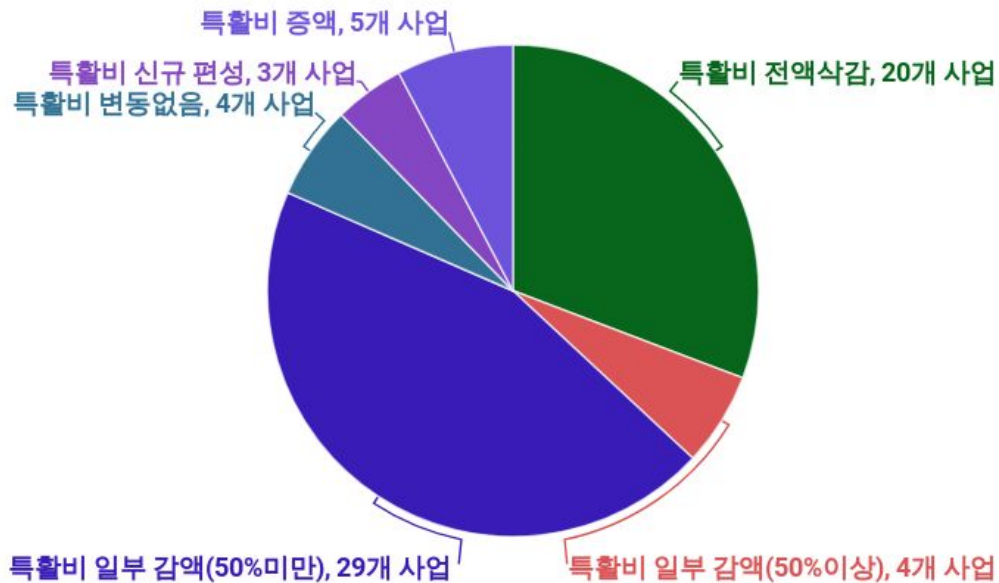
1. 2019년 예산안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수 변화

- 2018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3092억 9000만원) 편성 사업은 62개였으나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2799억 7700만원) 편성 사업은 45개로, 17개 감소함.
- 2019년 예산안에서 전년도 대비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20개, 50% 이상 감축된 사업은 4개, 50% 미만으로 감축된 사업은 29개에 이름. 반면 특수활동비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은 4개, 증액·신규 편성된 사업도 각각 5개, 3개 있었음.

[그림1] 2018년 대비 2019년의 예산안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수 변화(2018년→2019년 예산)



[그림2]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받은 개별 사업의 전년대비 특수활동비 전액삭감/일부감액/변동없음/증액/신규 편성 현황



2.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 현황

-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을 살펴보면, 10개 기관의 20개 사업에서 2018년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94억 9600만원)를 2019년도에 전액 삭감함.
-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대체로 기관 운영비 혹은 기본경비 지급과 관련된 사업이었으며, 국방부의 경우에는 해외파병 관련 예산에서, 법무부의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활동 및 공소유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됨.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 내역 및 삭감 금액은 아래와 같음(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2] 참고).
 - 공정위: 1개 사업
 - 기관운영비총액 인건비성기본경비(3500만원 삭감)
 - 경찰청: 2개 사업
 - 감사관감찰활동(2600만원 삭감), 경찰유무선망개선(35억 4100만원 삭감)
 - 관세청: 1개 사업
 - 관세탈루심사(3600만원 삭감)

- 권익위: 1개 사업
 - 기관운영기본경비(3억 8000만원 삭감)
- 국방부: 3개 사업
 -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1700만원 삭감), PKO파병(4300만원 삭감), 주요기관 기본경비(2억 6200만원 삭감)
- 국회: 7개 사업
 - 입법활동지원(15억 5200만원 삭감), 국정감사및조사(4억 7600만원 삭감), 위원회활동지원(15억 5000만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지원(2억 3200만원 삭감),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7900만원 삭감), 특별위운영지원(6억 6700만원 삭감), 국제회의(6300만원 삭감)
- 대법원: 1개 사업
 - 기관운영 기본경비(2억 5600만원 삭감)
- 민주평통: 1개 사업
 - 자문회의 운영(6500만원 삭감)
- 방위사업청: 1개 사업
 - 기본경비(3000만원 삭감)
- 법무부: 2개 사업
 - 공소유지(1800만원 삭감), 특별감찰활동(1억 6800만원 삭감)

[표2]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10개 기관, 20개 사업)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사업코드)	특수활동비 예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공정거래위원회 (1개 사업)	기관운영비총액 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0)	35	-	▼ 35 (100%)
경찰청 (2개 사업)	감사관감찰활동(7133-311)	26	-	▼ 26 (100%)
	경찰유무선망개선(4233-311)	3,541	-	▼ 3,541 (100%)
관세청 (1개 사업)	관세탈루심사(1231-300)	36	-	▼ 36 (100%)

국민권익위원회 (1개 사업)	기관운영기본경비(1111-250)	380	-	▼ 380 (100%)
국방부 (3개 사업)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17	-	▼ 17 (100%)
	PKO파병(5134-303)	43	-	▼ 43 (100%)
	주요기관 기본경비(7111-254)	262	-	▼ 262 (100%)
국회 (7개 사업)	입법활동지원(1031-300)	1,552	-	▼ 1,552 (100%)
	국정감사및조사(1031-305)	476	-	▼ 476 (100%)
	위원회활동지원(1032-300)	1,550	-	▼ 1,550 (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7)	232	-	▼ 232 (100%)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8)	79	-	▼ 79(100%)
	특별위운영지원(1032-319)	667	-	▼ 667(100%)
	국제회의(1033-301)	63	-	▼ 63(100%)
대법원 (1개 사업)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256	-	▼ 256 (1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개 사업)	자문회의 운영(1031-300)	65	-	▼ 65 (100%)
방위사업청(1개 사업)	기본경비(7011-251)	30	-	▼ 30 (100%)
법무부 (2개 사업)	공소유지(1337-300)	18	-	▼ 18(100%)
	특별감찰활동(1831-300)	168	-	▼ 168(100%)
10개 기관, 20개 사업				▼ 9,496(100%)

3.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대비 동결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사업

-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거나 증가한 사업 및 증가한 금액 수준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구체적인 내용은 [표3] 참고). 이중 경찰청의 ‘범죄수사역량강화’와 ‘수사국 기본경비’, 법무부의 ‘정보기획지원’은 2018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특수활동비가 새롭게 편성된 사업임.
 - 경찰청: 4개 사업 특수활동비 증가
 - 범죄수사역량강화(42억 9400만원 증가), 수사국기본경비(2억원 증가), 치안정보활동(9억 3900만원 증가), 외사경찰활동(9억 8400만원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사업 특수활동비 증가
- 수탁사업(800만원 증가)
- 국무조정실: 1개 사업 특수활동비 동결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전년대비 변동없음)
- 대통령경호처: 1개 사업 특수활동비 동결
-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전년대비 변동없음)
-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 특수활동비 동결
- 업무지원비(전년대비 변동없음)
- 법무부: 2개 사업 특수활동비 증가
- 외국인체류질서 확립(16억 6300만원 증가), 정보기획지원(3600만원 증가)
- 외교부: 1개 사업 특수활동비 동결
- 정상 및 총리외교(전년대비 변동없음)
- 통일부: 1개 사업 특수활동비 증가
- 통일정책추진활동(3억 1700만원 증가)

[표3]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사업(6개 기관, 12개 사업)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사업코드)	특수활동비 예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경찰청 (4개 사업)	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1)	-	4,294	▲ 4,294 (신설)
	수사국기본경비(7111-253)	-	200	▲ 200 (신설)
	치안정보활동(2133-311)	32,262	33,201	▲ 939 (2.9%)
	외사경찰활동(3132-311)	12,254	13,238	▲ 984 (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사업)	수탁사업(5133-351)	518	526	▲ 8 (1.5%)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개 사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280	280	- (변동없음)
대통령경호처 (1개 사업)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1231-301)	8,500	8,500	- (변동없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1개 사업)	업무지원비(1131-300)	9,650	9,650	- (변동없음)
법무부 (2개 사업)	외국인체류질서 확립(1233-302)	7,037	8,700	▲ 1,663 (23.6%)
	정보기획지원(7032-304)	-	36	▲ 36 (신설)
외교부 (1개 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713	713	- (변동없음)
통일부 (1개 사업)	통일정책추진활동(7033-303)	2,144	2,461	▲ 317 (14.8%)

-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금액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한 사업들 중 상당수는 정보수집이나 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국기본경비’, 국무조정실의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법무부의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등은 특수활동비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동결되거나 오히려 증가해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감축 또는 폐지해야함.

2. 2019년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편성 점검 및 평가

1.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적정성 평가 기준

-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편성 가능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함.
 - 기재부 지침은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은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이므로 그러한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 45개에 대해, 해당 사업이 기재부 지침에서 규정한 특수활동비 편성 원칙(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활동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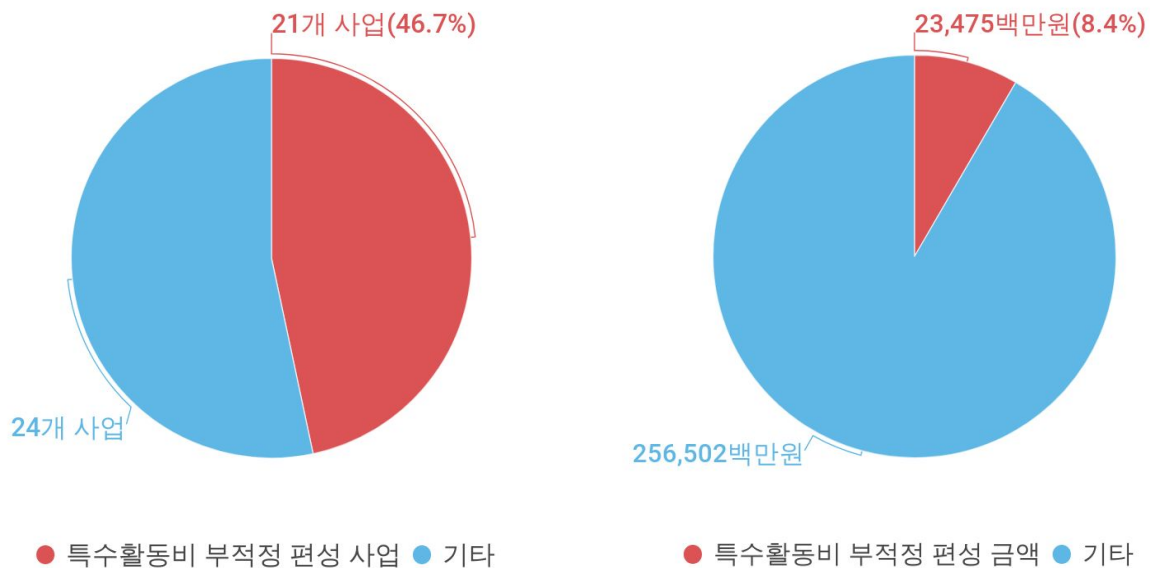
※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도 특수활동비의 집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포함되나, 수사·조사활동의 기밀유지 필요성 여부 판단은 이론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해 일단 정보수집, 조사, 수사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음.

2. 2019년 예산안에서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현황

-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평가한 사업은 모두 21개임.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23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특수활동비 전체 금액(2799억 7700만원)의 8.4%가 이에 해당함.

[그림3]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중 부적정한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수 및 금액



-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행정업무지원이나 운영기본경비, 국정수행경비, 외교상 의전 소요 비용 등이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는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및 수용시설 운영과 같은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임.
- 2019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된 사업과 편성된 금액은 아래와 같음(구체적 내용은 [표4] 참고).

- 경찰청: 3개 사업(5억 7500만원)
 - 행정업무지원(1억 9500만원),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1억 8000만원), 수사국기본경비(2억원)
- 국무조정실: 2개 사업(9억 1300만원)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2억 8000만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6억 3300만원)
- 국회: 2개 사업(9억 8000만원)
 - 의원외교활동(1억 8000만원), 기관운영지원(8억원)
-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96억 5000만원)
 - 업무지원비(96억 5000만원)
- 법무부: 12개 사업(106억 4400만원)
 -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4200만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8600만원), 인권국기본경비(8000만원), 외국인체류질서 확립(87억원), 외국인본부 기본경비(9000만원),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8500만원), 교정교화(10억 3700만원), 교정본부 기본경비(1억 7900만원), 소년원생 수용(9700만원), 치료감호자 수용관리(500만원), 보호관찰활동(1억1000만원), 기관운영경비(1억 3300만원)
- 외교부: 1개 사업(7억 1300만원)
 - 정상 및 총리외교(7억 1300만원)

[표4] 2019년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모드) [집행 실·국]	사업목적 / 법령상 사업근거	특수활동비 예산액			산출근거	부적정 편성으로 평가한 사유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기관명: 경찰청 (3개 사업, 5억 7500만원)						
행정업무지원 (7131-311) [기획조정관]	* 사업목적 : 치안활동비 및 사건수사비 등 지원을 통한 일선 경찰관의 직무수행 여건 등을 지원 *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법>, <경찰청과	10,468	195	▼ 10,273 (98.1%)	치안활동비 및 사건수사비 등 지원을 통한 일선경찰관의 직무수행 여건 등을 개선	행정업무지원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행정업무지원 사업의 주요 활동인 일반 치안활동, 일선관서 행정지원 등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기밀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삭감이 필요함.
경무인사기 획관실 기본경비 (7111-262) [기획조정관]	* 사업목적 : 경무인사기획관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경찰청사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위탁경비, 경찰의날 행사 및 각종 행사경비 등) * 법령상 근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380	180	▼ 200 (52.6%)	경무인사기획관 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경찰청사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위탁경비, 경찰의날 행사 및 각종 행사경비 등)	경찰청사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위탁경비, 각종 행사경비 부담 등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는 특수활동비 편성의 취지와 관계없는 사업임. 해당 사업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이미 50% 이상 감축되었으나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음.
수사국기본 경비 (7111-253) [수사국]	* 사업목적 : 수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 법령상 근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200	▲ 200 (신설)	수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경찰청 수사국에는 범죄수사역량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가 이미 배정되어 있음. 구체적인 수사활동을 위한 사업 외 부서의 일반 경비는 특수활동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수활동비 편성이 불필요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개 사업, 9억 1300만원)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총무기획관 실]	*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80	280	- 변동없음	-	기관의 기본운영경비 지급은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 (7036-306)	*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	704	633	▼ 71 (10.1%)	-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및 국정수행 활동은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총무기획관 실]	*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6조, <정부조직법>					있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	--	--	--	--	---

국회 (2개 사업, 9억 8000만원)

의원외교활 동 (1033-300) [의회외교]	* 사업목적 - 외빈초청외교 : 외국 의회의장을 비롯한 의회·정부인사의 예방 및 면담, 간담회, 산업·문화 시찰 등 - 의원방문외교 : 주요국 의회·정부인사와의 면담 및 교류 * 법령상 근거 :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553	180	▼ 373 (67.5%)	(1) 방문외교 특수활동비 : (‘18년) 513백만원 → (‘19년) 67백만원 (346백만원 감소) (2) 외빈초청 및 의전행사 특수활동비 : (‘18년) 40백만원 → (‘19년) 13백만원 (27백만원 감소)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67%로 대폭 감축된 것은 바람직하나,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과 거리가 있으므로 더 감축해 전면 삭감될 필요가 있음.
기관운영지 원 (7011-251) [사무처기본 경비]	* 사업목적 : 국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지원 강화 * 법령상 근거 :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 직제>	1,100	800	▼ 300 (27.0%)	특수활동비 : (‘18년) 1,100백만원 →(‘19년) 800백만원 (300백만원 감소)	국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만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포함될 필요가 없음.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3억원 감소했으나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구됨.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 96억5000만원)

업무지원비 (1131-300) [총무비서관 실]	* 사업목적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9,650	9,650	- 변동없음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으나, 해당 사업은 목적인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 및 수사활동에
-------------------------------------	--	-------	-------	-----------	---------------------------------	--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	--	--	--	------------------

법무부 (12개 사업, 106억 4400만원)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1031-300) [법무실]	* 사업목적 - 국가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해 소송수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 각 부처 지휘 - 헌법재판의 경우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해 수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법률복지 지원 *법령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정부법무공단법>,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49	42	▼ 7 (14.3%)	○ 중요사건 정보수집비(42백만원): 특수활동비(42) = 중요사건 22 + 송무업무 20	*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및 헌법재판에서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고, 공익법무관 배치를 통한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은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인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정보수집 및 이에 준하는 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 요구된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음.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32-300) [법무실]	* 사업목적 - 국제규범의 성안과정에 참여, 성안된 국제규범의 연구 및 국내입법 반영 - 각종 통상협상에서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 및 법률서비스, 지식재산권 집행, 투자 분야 협상 직접 수행 - 통상법 연구, 통상 전문 학술지 발간 -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관리·감독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의 국제분쟁 예방·공무원 등을 상대로 ISD 예방 교육 - 헤이그아동탈취협약	87	86	▼ 1 (1.2%)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연구·자료수집 및 자료발간, 법률자문, 세미나, 간담회, 회의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인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수사 등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필요함.

	중앙당국으로서 각국 중앙당국과의 협력 하에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지원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인권국기본 경비 (7011-263) [인권국]	* 사업목적 :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 지원 *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 집행지침>	94	80	▼ 14 (14.9%)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 등 활동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기본경비 지급 목적의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지 않음.
외국인체류 질서 확립 (1233-30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미표기	7,037	8,700	▲ 1,663 (23.6%)	-	법무부의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사업목적 및 법령상 근거, 산출근거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정됨. 해당 사업의 예산 전액(87억원)이 특수활동비 형태로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음. 특수활동비 감액 필요.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7011-25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목적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서운영경비 및 노후 집기 교체비 등 지원 * 법령상 근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8	90	▼ 48 (34.8%)	-	소모품 및 집기구입 등 기관운영, 회의참석 등 국내외출장, 사법경찰관리 등 특정활동 지원, 간담회, 고용부담금 등 외국인본부의

	기본기능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기본경비에 지급되는 예산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에 편성하도록 한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감 필요함.
출입국사무 소운영기본 경비 (7018-250) [출입국·외 국인정책본 부]	* 사업목적 : 출입국 소속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사무소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131	85	▼ 46 (35.1%)	○사법경찰관리 활동: (‘18년) 131백만원 → (‘19년) 85백만원	소모품 및 집기류 구입 등 기관운영, 직무 출장, 사법경찰관리 등 출입국사무소 운영경비 지급되는 예산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에 편성하도록 한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감 필요함.
교정교화 (1532-301) [교정본부]	* 사업목적 - 시설 내 성폭력 사범 및 마약사범 등에 대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 심리치료센터, 분류센터, 혈액투석센터, 교화방송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 등 수용처우 전문센터 운영 *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86	1,037	▼ 49 (4.5%)	-	교정기관 수용자의 교정교화 활동은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수집 및 수사 등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전면 삭감이 요구됨.

교정본부 기본경비 (7011-257) [교정본부]	* 사업목적 - 법무부 교정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교정기관 호송버스 등 공용차량 구입 드 *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1	179	▼ 32 (15.2%)	○ 수사 등 특정업무 수행 : (‘18년) 211백만원 →(‘19년) 179백만원 (32백만원 감소)	예산안 산출근거로 볼 때, 수사 등 특정업무 수행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으나 교정본부는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님. 본부의 기본경비 집행도 특수활동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만큼,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 요구됨.
소년원생 수용 (1632-300) [범죄예방정 책국]	* 사업목적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하고,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 안정된 사회 복귀 지원 - 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대행 소년원에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실시해 처우지침 제공 및 재비행 방지교육 - 자립생활관 운영으로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의 완전한 사회정착 지원 *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114	97	▼ 17 (14.9%)	-	소년원에 위탁된 소년들의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재비행 방지교육 등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및 수사 등 활동과 하등 관계가 없는 사업임. 따라서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불필요하므로 전액 삭감 요구됨.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634-300) [범죄예방정책국]	* 사업목적 - 치료감호법에 의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알코올이나 그밖의 약물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치료·재활교육 실시 - 임상연구 및 선진 외국의 치료감호제도 연구 - 검찰·법원·경찰로부터 의뢰한 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 * 법령상 근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6	5	▼ 1 (16.7%)	○ 기타 운영비 - 치료감호소 운동장 노후 고무바닥재 교체공사비 - 치료감호소 수용자 관리 및 시설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 (특수활동비 : 5백만원 = 381명 x 1.3천원 x 12월)	치료감호소 수용자 관리 및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성 경비는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등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음.
보호관찰 활동 (1635-300) [범죄예방정책국]	* 사업목적 -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방지, 사회 보호 -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에게 치료명령을 실시, 재범방지 및 사회 보호 -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실시 - 성폭력, 아동학대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외부강사 등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 * 법령상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129	110	▼ 19 (14.7%)	○ 여비, 활동비 등 보호관찰·수감·사 회봉사명령 등 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 특수활동비 : (‘18년) 129백만원 →(‘19년) 110백만원 (19백만원 감소)	보호관찰·수감·사회봉사 명령 등 업무 지원은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은 부적절함.

기관운영기 본경비 (7011-250) [기획조정실 등]	* 사업목적 : 기획조정실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157	133	▼ 24 (15.3%)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등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므로, 기관 운영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함. 전액 삭감이 요구됨.
---	--	-----	-----	-------------------------	---	--

외교부 (1개 사업, 7억 1300만원)

정상 및 총리외교 (1231-401) [의전장실]	* 사업목적 : -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UN총회 등 다자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참가와 양자 방문 - 총리의 다자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 - 외국 국가원수, 총리 등 외빈영접 관련 의전행사 수행 * 법령상 근거 : <헌법> 66조 1항, <헌법> 73조	713	713	- 변동없음	-	대통령, 총리, 외빈 영접 관련 의전행사를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수집이나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됨.
--	--	-----	-----	-------------------	---	--

3.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 각 국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상당 부분은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또는 비밀활동비로 해당 기관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예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함.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또한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⁴ 제4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정보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2019년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4개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법령상 근거가 <국가정보원법> 또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예산안 산출 근거에 정보예산이 명시된 사업을 확인하고, 이들을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추정함.
- 2019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로 명확히 추정할 수 있는 사업은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 ‘외사경찰활동’,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등 5개 사업임(구체적인 내용은 [표5] 참고). 2019년 예산안에서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만 총 1939억 5000만원이며, 이는 14개 국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2799억 7700만원) 중 69.3%에 이르는 규모임⁵.
-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1939억 5000만원)은 2018년 (2028억 1900만원) 대비 약 88억 6900만원(4.4%)이 감소해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감소 비율(9.5%)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더욱이 경찰청과 통일부는 해당 예산이 각각 4.3%, 14.8% 증가함.
 - 경찰청
치안정보활동(2.9% 증가): 322억 6200만원(2018년) → 332억 100만원(2019년)
외사경찰활동(8.0% 증가): 122억 5400만원(2018년) → 132억 3800만원(2019년)
 - 국방부
군사정보활동(7.4% 감소): 1476억 7000만원(2018년) → 1368억 1300만원(2019년)

⁴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의 법령상 근거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임.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각 국가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도 국정원의 직무에 포함됨.

⁵ 국정원 기관 자체 예산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중 69.3% 이상이 국정원이 편성 권한을 행사한 예산으로 추정

○ 통일부

통일정책추진활동(14.8% 증가): 21억 4400만원(2018년) → 24억 6100만원(2019년)

○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지원(3.0% 감소): 84억 8900만원(2018년) → 82억 3700만원(2019년)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조정대상 기관에는 상기한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외에도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됨.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는 법령상 근거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인지 추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업들도 다수 있었음. 따라서 실제 2019년 예산에는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활동비, 정보예산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5]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집행 실·국] (사업코드)	사업목적 / 법령상 사업근거	특수활동비 예산액			산출근거 및 특이사항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기관명: 경찰청 (2개 사업, 464억 3900만원)					
치안정보활동 등 (2133-311) [정보국]	* 사업목적 - 치안정보 수집·분석·전파 - 테러, 안보위해, 국민안전, 재해재난 등 치안정보 수집·분석 역량제고 - 노후 채증장비 교체 등 정보장비 현대화 및 치안정보 관리기반 지속적 확충, 치안정보활동 강화 - 국가안보·사회 안정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신원조사 역량 강화 * 법령상 근거 :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정원법>, <여권법>, <보안업무규정> 등	32,262	33,201	▲ 939 (2.9%)	특수활동비 : (‘18년도) 32,262 → (‘19년도) 33,201백만원 (939백만원 증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외사경찰활동 (3132-311) [외사국]	* 사업목적 - 외사사범 검거활동 - 체류외국인의 범죄노출 최소화, 다문화치안활동 -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예방 및 피해보호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활동 - 첨단 산업기술 유출방지 수사활동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및 관광질서 확립 * 법령상 근거: <형사소송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12,254	13,238	▲ 984 (8.0%)	특수활동비(정보예산): ('18)12,254백만원 → ('19)13,238백만원 (984백만원 증가)
-------------------------------	---	--------	--------	-----------------	---

국방부 (1개 사업, 1368억 1300만원)

군사정보 활동 (7131- 302) [계획예산관실]	* 사업목적 :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생산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 제3조	147,670	136,813	▼ 10,857 (7.4%)	군사정보비 : 147,670→ 136,813백만원, (10,857백만원 감소) ▪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경비 ⁽¹⁾
------------------------------------	---	---------	---------	--------------------	--

통일부 (1개 사업, 24억 6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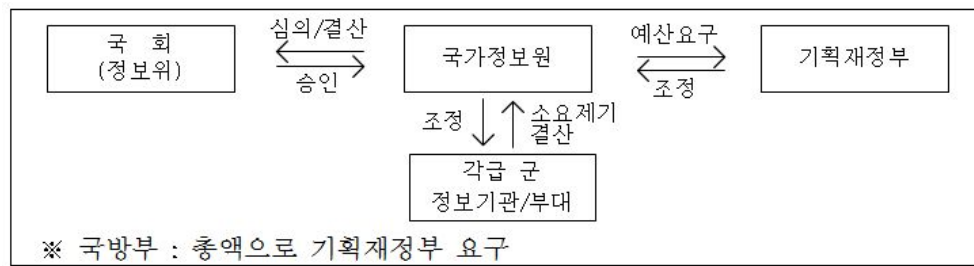
통일정책 추진활동 (7033-303) [기획조정실]	* 사업목적 : 대북협상력 제고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2,144	2,461	▲ 317 (14.8%)	<국회법> 제37조, 제54조, 제84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 제5조, 제11조에 의거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별도 심의
------------------------------------	--	-------	-------	------------------	---

해양경찰청 (1개 사업, 82억 3700만원)

기획특수활동지원 (7203-306) [기획조정관]	* 사업목적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원법> 제12조	8,489	8,237	▼ 252 (3.0%)	기획특수활동지원 : ('18년) 8,489백만원 → ('19년) 8,237백만원
-----------------------------------	--	-------	-------	-----------------	--

(1)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사업 집행절차

[출처: 국방부(2019.8.),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확정) 사업설명자료(II-1)」, p.1410]



1. 불필요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과감히 삭감해야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감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공정위, 권익위, 대법원, 민주평통,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아예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국회도 지난해 대비 84.4%(52억 9200만원) 감축함.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을 2018년 62개 사업에서 2019년 45개로 축소할 것도 긍정적 임.
-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최소한 21개 사업(234억 7500만원)은 여전히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업무지원이나 운영기본경비, 국정수행경비, 외교상 의전 소요비용 등이 정보수집,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특히 경찰청의 수사국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법무부의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외교주 정상 및 총리외교 등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과 무관함에도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와 같이 유지되거나 증액됨. 그러나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은 해당 사업의 예산은 폐지되거나, 필요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함.
- 2019년 예산안에서 경찰청이 ‘감사관감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나, 관세청이 ‘관세탈루심사’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같이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대폭 삭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2.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으로, 각 기관의 예산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게 해야

- 국정원 기관 자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2019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2799억 7700만원) 중 최소 69.3%에 해당하는 1939억 5000만원이 국정원이 편성하는 예산(정보예산 또는 비밀활동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출근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고려할 때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정보위에서 심의함.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 의한 사전·사후 감시가 더욱 어려움.
- 그런 만큼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예산의 경우는 집행 권한이 어느기관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에 집행권한이 있다면 예결산 심사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함. 또한 국정원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겨 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발행일 2018. 11. 12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302 hwa@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